

<p>전 협의토록 하여 교통시설물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p> <p>-기타 조례안에서는 관련조직 및 규정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정리 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p> <p>○ 제5장 하천복개구조물 관련</p> <p>-안 제35조(점용자 지정 등)에서 하천복개 구조물에 설치한 시설물의 점용자를 시설물의 주용도에 따라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및 구청장과 소관부서의 장으로 세분화하여 그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p> <p>-기타 조례안은 관계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조문 정리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p> <p>○ 제6장 하천 및 하천시설물과 제7장 하수도 시설물 관련</p> <p>-안 제40조 내지 제45조에서는 본조례의 개정에 따라 추가 포함된 하천 및 하천시설물과 하수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도로 및 도로시설물과 공동구 시설관리 규정의 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p> <p>□ 종합검토의견입니다.</p> <p>○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 및 하천시설물 등을 조례적용 대상시설물에 추가하고 시설물 관리자의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안전관리 체제 강화와 공동구 관리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위한 관련 규정들을 신설하여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 조문정리를 통해 조례구성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p> <p>○ 다만, 일부 미흡하게 표기되어 있는 조문의 별첨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조례 체계에 맞게 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p>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없음</p> <p>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p> <p>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별첨)</p> <p>8.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재적의원 15명 전원 일치 의결)</p>	<p>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p> <p>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법 제3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p> <p>제3조(점용허가 등) ①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공동구 점용(사용)허가 신청서를 점용 또는 사용예정일 30일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p> <p>제4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점용료는 당해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점용예정면적은 효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용을 보조받은 때에는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공제한다.</p> <p>③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비용의 미납액에 그 미납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점용료로 한다.</p>
---	---

<p>④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은 1월로 보며 최소 사용면적은 900 제곱센티미터로 한다.</p> <p>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월사용료 : [사용면적×인근토지가격(부동산시가표 준액)의 10퍼센트] /12</p> <p>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월사용료 : [사용면적×인근토지가격(부동산시가표 준액)의 20퍼센트] /12</p> <p>제5조(관리비) ① 공동구를 점용한 자는 당해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개축, 유지, 재해복구, 조명, 배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시설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관리비는 당해 공동구를 점용한 자가 함께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비 총액에 대한 점용면적비율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4조제4항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총 소요비용에서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관리비총액으로 할 수 있다.</p> <p>제6조(부과·징수) ① 시장은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납입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기한은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의 별도 협의가 있거나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4조제4항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최초년도분은 공동구 사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로 하며, 다음년도분부터는 당해년도 3월말일로 한다.</p> <p>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공동구 사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 한다.</p> <p>④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연2회 분할하여 징수하되, 납부기한은 매년 5월말일과 11월말일로 한다.</p>	<p>제7조(이의신청) ①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를 부과받은 자가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 부과·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p> <p>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제8조(지방세법의 준용)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 및 제12조중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 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에 계속)</p>
--	---

[별지 서식]
공동구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제3조 관련)

공 동 구 명			
위 치			
기 간			
목 적			
개 요			
점 용(사용) 기 관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점용(사용) 위치도
2. 평면도
3. 단면도
4. 점용(체적)산출내역서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중 “시설물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 또는 위탁받은자”를 “시설물관리자 또는 위탁받은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하고, “관리자 및 위탁받은자”를 “관리자”로 한다.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안 제28조(제1항 및 제3항)·안 제35조(제3항)·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중 “총괄관리자”를 각각 “시장”으로 한다.

안 제12조중 “도로및도로시설물의 관리자는”을 “관리자는 도로및도로시설물에 대하여”로 한다.

안 제31조제2항중 “교통관리실장”을 “총괄관리자”로 한다.

안 제35조제2항 제2호중 “관리부서”를 “관리부

서의 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호의 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도로 및 도로시설물